

*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702-701 대구직할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권오정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4, Vol. 3, 19-40

농촌조직화와 농촌노년층문제

윤 수 중

오늘날 한국에서는 급속한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업을 담당할 주체가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이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에서 그 역할을 잃어가고 국민에게 식료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업의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농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는 한국사회 전체의 발전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이후 식민지공업화의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택한 한국사회는 전후 일정 기간 정체하였으나 6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 각 부분은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자본-임노동관계의 확대에 기초하여 도시산업부문에서의 공업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공업부문은 세계체제 속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당한 정도의 생산력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에 따라 자본-임노동관계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았더라도 많은 생산부문이 자본주의의 운동기제하에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은 사회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모습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 왔다. 농가호수와 농업인구는 대폭 줄어들었고, 농업생산은 기계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상품생산농업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농업이 지닌 위기의 본질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공업부문에 비해 여전히 영세한 소농경제체제하에 있다는 점이다.

세계체제 속의 일정한 위치 속에서 특정한 공업부문만을 특화시켜 발전시키는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공업부문과 소생산적 농업부문 사이에는 생산력 격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특히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지체되었다. 더욱이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따르자면, 영세한 소농경제는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즉 선진국의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세계경쟁 속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는 특정 산업분야(유망산업)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문은 수입을 통해 해결하든가 사양화시키려는 정책에 따라 농업은 전반적인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농업위기에 대처하고 어떻게 농업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농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틀 내에서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 적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국가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 이 논리는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을 개편하려는 시도로 연결되며, 농업의 축소조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농업연구자나 농민운동단체에서는 흔히 '독점자본의 농업 지배'론으로 독점자본과 소농의 대립구조 속에서 농업을 설명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 농민의 상황을 '농민충분해'론을 통한 몰락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농업현실에서 최종적인 착취대상으로 되고 있는 빈농이 중심이 되어 농업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를 물리쳐야 한다는 농민운동의 방향설정으로 연결된다 (이영기, 1988).

그런데 농업은 사회구성 내에 일정한 생산부문(자본주의 사회구성하의 소상품생산)으로서 농업외부의 자본의 지배가 농업을 해체하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항상 현실적인 내부

과정을 통해서 관철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농업의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자본의 지배를 일정하게 견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농업의 해체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동시에 농업해체의 위기는 농업 내에서 영세한 소농경제의 해체로서 나타나며, 바로 이 영세한 소농경제의 해체위기를 전진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자본의 지배'를 배제해야 한다는 당위적 해결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흔히 가족농이라고도 표현되는, 현재의 영세 소농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농업의 해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종적인 담보물이 될 수 있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역영농조직화를 통한 농업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노년층 문제를 어떻게 포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농촌조직의 영농을 통한 농업구조 개편

영세소농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농업노동력구성의 급속한 변화, 농업기계화의 진전, 국제적인 개방압력 속에서 농업구조 개편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그 만큼 농업구조 개편의 필연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몇 가지 방향에서 전개한다.

1. 상업적 전업농 (기업농)

정부와 비교우위론자들은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농업,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농업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경영규모의 급속한 증대와 생산능률의 고도화를 부르짖으면서 '상업적 전업농'을 육성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은 소수의 농민들로 하여

금 농업생산을 고도화하여 농업선진국과 경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향은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에서, 그리고 신농정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농업에 대한 저투자와 미온적인 정책으로 농업의 생산력 발전 수준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서 상업적 전업농의 육성을 중심으로 한 규모확대로 과연 우리 나라 농업의 합리적 개편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개별경영의 규모확대가 소유지의 확대와 더불어 진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개별경영에 의한 규모확대는 분산경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영세농경제는 경지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규모확대를 위해 임대차를 통한 경지의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분적으로 규모확대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지의 분산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구조개편은 소수의 농민을 중심으로 농업을 담당케 하고 다수의 농민을 탈락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계화를 통한 生力化에 근거한 이러한 개편전략은 많은 농민의 탈락 및 실업을 야기시키며, 농업의 단작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이러한 재편논리는 현재의 농업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며, 전업농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은 세계자본주의의 하위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한국 독점자본을 축으로 한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리에 입각한 현재의 농업정책은 수입개방을 통해 농산물부문을 감당하고 국내 농업생산비용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2. 협업화

개별농업의 경영규모확대에 의한 농업구조의 개선방향은 흔히 기업농적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협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비판받아 왔다. 협업화론자들은 대경영의 이점을 살리고 다수

농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방안으로서 협업농의 육성을 들고 있으며, 협업정관작업 등을 통해 협업경영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해 보려고 하였다 (김병태, 1982; 박현채, 1982; 유인호, 1967). 그런데 문제는 협업경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현실적 조건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협업화를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협업경영이 갖는 개별경영에 대한 생산력적 우위성에 대한 주장과 이에 대한 강조, 나아가 협업화의 당위성을 주장이 우세했다. 결국 농업생산력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작업의 협업화와 공동이용이 진전되는 단계에서 공동경영을 강조하게 되었다. 더욱이 농업외부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생성되었던 협업경영도 해체되기 일췌였고, 소농민적인 자기보위식 경영의 논리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었다.

협업경영은 여러 가지 점에서 대경영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실천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농업의 협업화는 다수 소농경영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애초에 현실의 소농적 생산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소농은 가족노동 중심의 생계농이라는 기본 성격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대나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불받지 못해도 자가노임이 실현되면 영농을 계속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협업화도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계속될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화논리가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운 것은 농업경영조건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협업화를 수행해가기 위한 생산력적 제조건의 변형이라는 문제가 당위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질적 사회화로의 방향이 확실하지 못하고 (현실사회주의가 노정한) 형식적 사회화로 된 것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3. (지역) 영농조직화

1)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여러 논자들이 현재 한국농업은 해체 위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전개와 더불어 농민들 스스로 농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앞서 말한 대로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논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농업생산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변화의 토대 위에서 점차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예전의 논의들과는 달리 훨씬 더 현실적 대안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내용으로는 농업노동력구성의 변화, 농업기계화의 진전, 농지조건의 정비, 작목체계의 변화 등과 국제적인 개방압력을 들 수 있겠다. 먼저 농업노동력구성의 변화는 젊은 노동력의 급속한 이농으로 인한 노령화가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농업노동력의 노령화가 급속해지면서 농업후계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으며, 점차 실질적인 영농이 불가능한 농가가 속출하게 되었다. 농업기계화는 70년대 경운기의 확산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80년대 들어서 보급된 중대형 농기계는 기계의 이용률 제고, 농기계 가격의 부담분산을 위한 공동소유(보유), 일정한 작업조에 의한 작업 등으로 인해 농업생산조직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리고 기계작업을 위한 농지의 경지정리가 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력부족과 농업기계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양자의 결합은 기존의 농업노동과정을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농업기계화는 영농규모 확대의 주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소규모경영을 대규모경영으로 바꾸어 가려는 농업구조 개편의 궁극적 구도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영세한 소농적 생산이지만 농업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나아가고 특정 작목을 중심으로 전문화와 단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농가 단위를 넘어서는 공동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농업내부의 변화에 덧붙여 국제적 개방압력의 가속화는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을 더욱 제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농업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 기존의 개별경영의 선택적 규모확대 방식으로서 전업농 중심의 육성방식이나 당위론적인 협업화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개별농가의 조직화(생산조직화)를 통한 영세소농구조의 극복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조직형태들을 어떻게 포괄하고 새롭게 변형시켜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2) 다양한 생산조직의 실태

농민들은 끊임없이 낮은 차원이지만 협업적 작업을 통해 영농을 해 나가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속화되는 기계화와 더불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을 비롯한 각종 생산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구조를 개편해 보려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농적 방향과 협업농적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개별농가의 영농조직화를 통해서 영세소농구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농촌에는 단순한 노동력교환형태인 품앗이조직에서부터 공동작업조직, 작목반조직, 공동이용조직, 수탁작업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부터 농협이나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 있고, 운영주체도 개인, 소수인, 집단, 마을단위 등 다양하다(윤수중, 1990).

이러한 생산조직들은 개별농가의 경영 위에서 가능한 부분을 조직화한 것들이며, 노동력과 기계의 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개개의 조직화에 머무는 것에서 몇 가지 요소의 조직화까지 나아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조직화의 수준은 낮다. 그럼에도 이들 생산조직은 공동작업, 생산시설 및 기계의 공동이용, 작업의 수위탁, 또는 중간생산물의 교환 등을 통해 농업구

조의 개편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더욱이 노동력부족이 심각해지고 기계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이러한 생산조직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리라 보고 있다.

3) 지역영농조직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편

개별농가 단위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농업구조 개편의 논의가 점차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개별농가를 조직화한다고 할 때, 현재의 농지 소유관계나 농업경영조건 등을 고려할 때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생산조직들에 주목하게 된다. 농업생산조직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그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² 개별경영의 규모확대(전업농육성)를 통한 농업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농업생산조직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농업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이들 생산조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각종 생산조직을 어떻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의 주요한 과제가 제기된다. 이들 조직의 합리적 결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가능하면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구조로 개편해 나가는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역농업조직화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진도, 1994).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업생산조직을 개별경영의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즉 개별경영의 규모확대(전업농육성)를 돕는 조직 또는 개별경영에 비해 부차적인 범주 또는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로 파악한다. 그런데 이농과 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가의 농업노동력구성이 불균등해지는 상황 속에서 상업적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는 부분적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겸업농이나 기간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포괄하는 농업구조개선이 되어야 생산의 확대 및 국토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별농가나 개별경영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개선이 아니라, 다수의 개별경영의 결합에 의한 영농조직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 단위로 농업구조를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³

여기에서의 지역단위는 반드시 행정단위와 일치되지는 않는다.⁴ 현재 농촌에서는 농작업을 소수의 작업자가 기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기계화가 진전된 논농사에서 두드러짐), 보통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영농단위는 기계의 대형화와 작업의 효율성 제고, 노동력 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마을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산단지의 경우는 몇 개의 마을 또는 넓게는 거의 1개 군단위에 달할 정도의 규모를 갖는 영농단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이라는 개념은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영농단위로서 공통성을 지닌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경영상으로는 개별경영과 공동경영의 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토지를 개별경영을 초월한 집단적 의사에 의해서 지역 전체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용방식을 결정하고, 그 이용방식에 따라 개별 토지를 개별농가가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이용방식을 결정하고 개별농가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지역 토지의 작업을 공동화하거나 수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소유권은 인정된 위에서 이용권에 대한 집단적인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농이라는 영세소농구조 위에서 소유권과 경영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업생산을 영농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농조직화(농업생산의 조직화)에 있어서는 농지유동화, 영농유형의 설정, 영농주체의 형성 등이 문제로 된

다. 또한 농업구조개편은 농업생산 및 농업생산조직의 조직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농촌 내에는 각종 사회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얹혀 있으며 생산조직은 이러한 다양한 생산조직의 일부이다. 생산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구조를 개편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이들 각 조직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지역 내의 각종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농촌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농촌노년층문제

이상과 같은 농촌조직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요소이다. 급속한 이농에 따라 농업노동력구성의 변화가 눈에 두드러지며 농촌조직화의 주동적 요소인 담당주체의 형성이 곤란에 처하게 된다. 영농주체의 형성이야말로 농촌, 농업의 재편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구체적인 과제이다. 물론 젊은이들에게 '농사'를 살리자고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니다. 농업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제반 사회적 조건들이 마련된다면 농업을 계속해 나갈 영농후계자를 확보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노동력의 구성이 일정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현실 조건 위에서 특정한 중심주체를 형성시키고 여타 노동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전업농 중심 육성정책의 경우 소수의 상층전업농을 중심으로 영농을 감당하게 하여 다수의 농민들을 농업생산에서 탈락시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발상에서는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특히 노년층을, 농업생산에서 분리시키고 복지정책으로써 이들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은 다수 농민을 파멸시킨 뒤 구호물자를 주어 구원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지역영농조직화를 통해서 농촌조직화를 도모할 경우 기계작업자나

특정 작목의 작업반 등을 중심으로 생산조직화를 이루어 나가되 지역 내의 다양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현재 한국 농촌에서 나타나는 노년층의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 보자.

1. 농촌인구(노동력)의 노령화

농가인구의 동향의 <표 1>을 보면, 1967년까지 절대인구수의 증가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51-65세층은 절대수에서 증가하였지만 65세 이상층은 절대수가 약간 증가하다가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가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 들기 시작한 1968년 이후 50세 층은 70년대 동안 절대수에서 약간 감소하다가 70년대 후반에 들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층은 절대수도 증가하고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령층의 동향은 80년대 들어서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50세 층은 절대수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층은 절대수와 비중 면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장노년층의 절대수 및 비중의 증가는 청소년층의 급속한 이농 및 농촌출산력의 급속한 저하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장년층의 농업담당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영농담당은 필연적이다. 농림어업취업자 동향을 연령별로 살펴 보면 (<표 2>),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농업취업자의 동향에서도 50세 층과 60세이상 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70년대 후반과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증가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층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들어 절대수의 증가가 눈에 두드러진다. 50세 이상의 농민들이 전체 취업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서 인구동향에서 보다 취업동향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현저히 높

윤 수 중

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장년층의 경우 농외취업의 가능성이 많은 반면, 노령층의 경우 농외취업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농촌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동향은 젊은 층의 급속한 이농(부분이농)으로 인한 것이며, 농촌에 잔존하는 노령층이 영농을 담당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게다가 평균연령이 길어지면서 노령화 현상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인구의 노령화가 도시에서 보다 농촌에서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상단 천명, 하단 %)

연도	계	연령별 인구					
		0-7	8-15	16-20	21-50	51-65	66+
1955	13,299	3,055	2,402	1,712	4,085	1,409	63
		23.0	18.1	12.8	30.7	10.6	4.8
1956	13,445	3,133	2,388	1,757	4,143	1,389	63
		23.3	17.8	13.1	30.8	10.3	4.7
1957	13,591	3,195	2,414	1,764	4,187	1,388	64
		23.5	17.8	13.0	30.8	10.2	4.7
1958	13,750	3,194	2,527	1,691	4,311	1,395	62
		23.2	18.4	12.3	31.4	10.1	4.6
1959	14,125	3,293	2,660	1,643	4,471	1,391	66
		23.4	18.8	11.6	31.7	9.8	4.7
1960	14,559	3,422	2,739	1,768	4,479	1,466	68
		23.5	18.8	12.1	30.8	10.1	4.7
1961	14,508	3,629	2,601	1,724	4,450	1,427	67
		25.0	17.9	11.9	30.7	9.8	4.7
1962	15,096	3,760	2,787	1,646	4,772	1,470	65
		24.9	18.5	10.9	31.6	9.7	4.4

농촌노년층문제

1963	15,266	3,825	2,860	1,599	4,875	1,446	65
		25.1	18.7	10.5	31.9	9.5	4.3
1964	15,553	3,847	3,002	1,635	4,953	1,466	64
		24.7	19.3	10.5	31.9	9.4	4.2
1965	15,811	3,615	3,153	1,705	5,238	1,475	62
		22.9	19.9	10.8	33.1	9.3	4.0
1966	15,780	3,495	3,253	1,727	5,198	1,784	62
		22.2	20.6	10.9	32.9	9.4	4.0
1967	16,078	3,636	3,461	1,630	5,223	1,974	62
		22.6	21.5	10.1	32.5	9.3	4.0

연령별 인구

연도	계	연령별 인구				
		14-	14-19	20-49	50-59	60+
1968	15,908	6,368	2,033	5,099	1,342	1,106
		40.0	12.7	32.0	8.3	7.0
1969	15,589	6,262	1,962	4,945	1,312	1,109
		40.2	12.6	31.7	8.4	7.1
1970	14,422	6,271	1,497	4,404	1,107	1,143
		43.5	10.4	30.5	7.7	7.9
1971	14,712	5,681	2,107	4,523	1,257	1,144
		38.6	14.3	30.8	8.5	7.8
1972	14,677	5,505	2,232	4,544	1,241	1,156
		37.5	15.2	31.0	8.5	7.8
1973	14,645	5,340	2,337	4,550	1,263	1,155
		36.5	16.0	31.1	8.5	7.9
1974	13,459	5,172	1,789	4,232	1,119	1,147
		38.4	13.4	31.4	8.1	8.5
1975	13,244	4,780	1,980	4,212	1,108	1,164
		36.1	15.0	31.8	8.4	8.7
1976	12,785	4,484	1,911	4,122	1,099	1,170
		35.1	15.0	32.2	8.6	9.1
1977	12,309	4,195	1,833	3,998	1,105	1,178
		34.1	14.9	32.4	9.0	9.6

윤 수 중

1978	11,527	3,812	1,685	3,781	1,095	1,155
		33.1	14.6	32.8	9.5	10.0
1979	10,883	3,460	1,625	3,537	1,102	1,159
		31.8	14.9	32.5	10.1	10.7
1980	10,827	3,230	1,684	3,701	1,074	1,138
		29.8	15.6	34.2	9.9	10.5
1981	9,999	2,939	1,534	3,300	1,077	1,147
		29.4	15.3	33.0	10.8	11.5
1982	9,688	2,758	1,477	3,202	1,086	1,165
		28.5	15.2	33.1	11.2	12.0
1983	9,475	2,571	1,446	3,149	1,111	1,198
		27.1	15.3	33.2	11.7	12.7
1984	9,015	2,338	1,377	2,961	1,127	1,212
		25.9	15.3	32.9	12.5	13.4
1985	8,521	2,114	1,271	2,830	1,129	1,177
		24.8	14.9	33.2	13.3	13.8
1986	8,180	1,918	1,231	2,682	1,148	1,200
		23.4	15.1	32.8	14.0	14.7
1987	7,775	1,712	1,164	2,515	1,161	1,219
		22.0	15.0	32.3	14.9	15.7
1988	7,277	1,501	1,071	2,306	1,166	1,228
		20.6	14.7	31.7	16.0	16.9
1989	6,786	1,314	976	2,114	1,147	1,235
		19.3	14.4	31.2	16.9	18.2
1990	6,661	1,370	734	2,259	1,111	1,187
		20.5	11.0	33.9	16.7	17.8
1991	6,068	1,175	647	1,876	1,115	1,255
		19.4	10.7	30.9	18.4	20.7

참고자료 : 농림통계연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연령층을 노년층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노년층을 전기고령자<65-75세>와 후기

농촌노년층문제

고령자<75이상>로 구분하여 다루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60세 이상층으로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런데 취업동향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층이 취업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아 90년대에 들어서는 25%를 넘고 있다. 즉 60세 이상층도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이다. 농촌노령층의 경우 노동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영농조직화와 관련시킬 때 노령층을 영농종사자와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비록 연령이 높더라도 가능한 한 일을 하도록 하면서 포괄해 나가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농림어업취업자의 연령별구성 (단위: 천명, %)

연도	계	연 령 별			
		14-19	20-49	50-59	60+
1967	4,811	617 12.8	3,236 67.3	677 14.1	281 5.8
1968	4,801	571 11.9	3,222 67.1	700 14.6	308 6.4
1969	4,825	650 13.5	3,130 64.9	670 13.9	375 7.8
1970	4,916	709 14.4	3,212 65.3	686 14.0	309 6.3
1971	4,876	655 13.4	3,115 63.8	730 15.0	376 7.7
1972	5,346	797 14.9	2,686 50.2	857 16.0	394 7.4
1973	5,569	834 15.0	3,385 60.8	902 16.2	448 8.0
1974	5,584	761 13.6	3,369 60.3	974 17.4	480 8.6
1975	5,425	702 12.9	3,300 60.8	962 17.7	461 8.5
1976	5,601	661 11.8	3,420 61.1	981 17.5	539 8.6
1977	5,405	595 11.0	3,435 63.6	927 17.2	448 8.3
1978	5,181	423 8.2	3,302 63.7	961 18.5	495 9.6
1979	4,887	285 5.8	3,067 62.8	985 20.2	550 11.3

윤 수 중

1980	4,658	238	5.1	2,922	62.7	978	21.0	519	11.1
1981	4,806	201	4.2	2,995	62.3	1,034	21.5	575	12.0
1982	4,623	176	3.7	2,855	61.8	1,023	22.1	571	12.4
1983	4,314	116	2.7	2,664	61.8	984	22.8	550	12.7
1984	3,909	88	2.3	2,353	60.2	911	23.3	557	14.2
1985	3,722	69	1.9	2,172	58.4	921	24.7	562	15.1
1986	3,662	60	1.6	2,065	56.4	934	25.5	603	16.5
1987	3,580	56	1.6	1,897	53.0	944	26.4	683	19.1
1988	3,484	32	0.9	1,752	50.3	1,008	28.9	691	19.8
1989	3,418	27	0.8	1,577	46.3	1,064	31.1	751	22.0
1990	3,292	20	0.6	1,420	43.1	1,074	32.6	779	23.7
1991	3,103	13	0.4	1,242	40.0	1,058	34.1	789	25.4

참고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2. 농촌노년층의 잠재실업화

통계상 농촌노령층의 농업취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판별적 고찰이 필요하다. 노령층의 농업취업의 내용은 농사를 주관한다는 것이지 농작업을 주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가구단위에서 영농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작업을 항상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기계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부농작업이 기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소수의 작업자를 중심으로 마을 및 지역 내의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다. 기계화는 그간 손노동력(또는 별거벗은 노동력)으로 감당하던 작업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노동력을 절약시켰지만, 이 또한 많은 유향노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는 취업노동력을 실제로 작업현장에서 배제하여 잠재적인 과잉인구로 만들며, 경영의 측면에서 완전 실업상태는 아니더라도 유향화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기계화에 의한 실업화는 벼농사지대에서 가장 광범하게 나

농촌노년층문제

타나고 있다. 벼농사지대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을 기계화하여 개별 작업자나 작업팀이 작업을 주도하고 영농주는 보조작업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장노년층 가구의 경우는 농작업을 위탁하고 보조작업만을 담당하는 경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에 반해 밭농사지역이나 혼작지역 또는 논이 많은 지역이라도 특수작물을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은 작업부문에 있어서는 손노동력의 수요가 많아 장노년층의 노동력유향화가 덜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벼농사가 기본적인 작목을 이루는 우리 나라 농업에서 기계화에 따른 이와 같은 농작업의 수위탁이 활성화되면서 장노년층이 젊은층에게 작업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장노년층의 연간 작업일수가 급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손노동력 작업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유향화된 노년층노동력을 다른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농촌조직화의 과정에서 기계작업의 위탁을 체계화하고 (건강한) 노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작목이나 작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기계화에 따라 농작업에 있어 남성작업과 여성작업이 분할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기계작업은 남성이 주도하고 보조작업이나 기계화가 불가능한 작업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계화가 어렵지만 상품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많은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때 유향화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같은 노년층이라 해도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향노동력 활용방식을 구체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3. 농촌가족의 해체

농촌노년층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농촌가족의 해체현상이다. 젊은 층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농촌에는 노년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잔존하게 된다. 물론 농촌에서도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지만 아주 적기 때문에 농촌 내부의 잔존가족이 생애주기의 흐름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지 않고 해체되게 된다. 이러한 해체의 형상은 1인가족, 부부가족 등으로 대개 노년층에 해당한다 (김홍주, 1992).

물론 농촌의 잔존가족은 도시의 자녀 및 자녀가족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지만, 일상생활과 생산에 있어 잔존 노령가족은 스스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정한 노동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농촌에서 고용노동에 종사하거나 자급적인 영농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는 그야말로 구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생계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연로한 경우 쇠약한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도 있지만 가족의 해체과정 때문에 이러한 대처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특히 노년층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어서 단독가구의 경우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농협조사월보, 1990년 12월).

해체과정에 있는 가족의 노인들은 도시로 가서 자녀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편이며, 그 경우에도 대부분 오랜 동안의 생활공간인 농촌을 떠나서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시 자녀 가족에게 왕래하거나 일정기간 머무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완전히 결합하여 살아 가기 보다는 농촌에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젊은 노동력의 급속한 이동과 그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은 농촌의 노인문제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농촌노인문제는 가족이 하는 기능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노인층의 생계를 확보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역할을 지역단위에서나 일정한 조직 및 단체들, 또는 이웃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협조사월보, 1989년 3월).

4. 노년층의 사회복지

기존의 농업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과 농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분리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김철규, 1994). 이러한 주장은 행정편의나 예산지출의 관점에서 편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지정책을 그야말로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가 내재해 있다. 물론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사회집단이나 사회문제를 그 사회의 긴장이나 위기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관장하는 집단들이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마치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농업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농민층을 몰락시킨 뒤 구호물자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정말 피구출 중민에 해당하는 층에게는 구호물자를 '그냥' 제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능력을 지니고 있는 층들을 은퇴시키고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건강한 고령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그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지체부자유한 노인, 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가족이 해체과정에 있고 농촌가족의 구성이 단순화되면서 부부가 기간노동력화되기 때문에, 병약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가족 차원에 맡기는 것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협조사월보, 1990년 3월).

고령화에 따라 생계유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의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생활보장 및 의료보장에서 나아가 간호인파견서비스나 간호시설, 위락시설(노인정 등)의 제공 등 현물제공 형태의 보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노년층의 복지는 개별농가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조직(단체)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충실활동, 예를 들면, 학습활동, 취미나 경스포츠 활동 등을 조직화하고, 농

촌의 전통행사나 영농, 생활기술의 청년층에 대한 전승활동 등도 조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체부자유한 고령자나 독신자를 위한 생활원조활동, 예를 들어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간병연구회나 자택간병 기능의 강화, 방문 및 상담서비스, 급식서비스 등을 농협 부녀회 등에서 주도할 수도 있다 (농협조사월보, 1993년 6월).

맺음말

이상에서 농촌조직화과정에서 노인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노년층을 농업생산에 포괄해 내면서 가족단위를 넘어선 지역 및 조직 단위에서 그리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농촌노년층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적극적 대책이란 단순히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년층을 농업생산에서 몰아낼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말한다. 나아가 노동능력이 없는 노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현상에 직면하여 지역 단위에서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나 틀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주

1. 소농이란 보통 가족노동력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경지를 보유하면 농업생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이다. 그러나 한국농민층의 경우 이런 의미의 소농은 오히려 일부 층에 한정되고, 전체적으로는 가족노동력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세한 경지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을 유지하는 영세소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자본 대 소농'이라는 대립구도로 파악하여 독점자본의 지배를 물리치면 농업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이 소농이 영세소농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2. 여기성의 생산조직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사용한다. 즉 농작업과정에서의 노동조직 (협의의 생산조직), 유통조직, 가공조직 등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영농조직은 생산조직을 포괄하며 농촌의 일정 지역단위 내에서 농업생산을 위시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조직이다. 생산, 유통, 가공 등의 각부문간의 조정 및 협동, 기계작업자간의 조정 및 계획,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행하는 조직이다.

4. '농촌지역종합개발'이라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에 제시된 개발정책에서의 지역 개념은 농업이라는 산업에 중심을 둔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단위라는 경계선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김병태 (1982) 한국농업경제론. 서울: 비봉출판사.
 김철규 (1994) 포스트UR시대의 한국 농업. 한국사회학회학술심포지엄: 한국사회개혁의 과제와 전망. 서울: 새길출판.
 김홍주 (1992) 현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2집.
 농협조사월보 (1989, 3월) 고령화사회 진전과 일본농협의 대책.
 농협조사월보 (1990, 3월) 고령화의 진전과 일본농협공제의 과제.
 농협조사월보 (1990, 12월) 일본의 농촌부인 및 고령자대책.
 농협조사월보 (1993, 6월) 일본농협의 노인복지 사업.
 박진도 (1994) 한국농업구조의 재편방향.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서울: 한길사.
 박현채 (1983) 한국경제와 농업. 서울: 까치출판사.
 유인호 (1967) 한국농업협업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윤수중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기 (1988) 농민층분해의 동향과 계층구성.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71. 서울: 연구사.

*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尹秀鍾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94, Vol. 3, 41-56

日本國における特別養護老人ホーム職員の 仕事満足度について

長田久雄

<Summary> 日本では、人口の高齢化に伴って、心身に虚弱や障害のある高齢者も増加してきており、要介護高齢者が利用する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需要も高まってきている。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利用者が良質な介護を受けるためには、施設の物的環境や運営の整備に加え、介護職員の処遇の質的向上が不可欠である。そのためには、介護職員の教育や研修は必要であるが、職員が満足感や充実感をもって就労できることも重要である。本研究では、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介護職員の仕事に対する満足度に影響する要因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介護職員、男性5人、女性41人、計46人を対象として、Job Description Index日本版、勤務体制、仕事に対する意識、施設の人間関係などについて調査を行なった。その結果、仕事内容および上司に対する満足度は、自分の理想と現実の仕事が一致しているほど高く、勤務時間・勤務体制に対する満足度は、夜勤の回数が少ないほど、および他の施設での就労経験がある方が高かった。本研究の結果から、介護職員の満足度を高めるには、自分が思い通りの仕事ができているという認識や夜勤の回数を適切に調整す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られる。